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의정부지방검찰청
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종민
전화 031-820-4460/팩스 0502-193-2572

보도자료
2024. 8. 7.(수)

제 목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오미경)는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태권도장 관원인 피해 아동을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강제로 밀어 넣고 27분간 갇혀 있게 함으로써 질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유발하여 살해한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죄로 오늘(8. 7.)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에서 7. 19.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(아동학대 중상해) 혐의로 사건 송치를 받은 4일 후 피해 아동이 사망하여, 복구된 CCTV 영상 정밀 분석, 태권도장 관계자 및 의료진 등 다수 참고인 조사, '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'를 통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 청취 등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,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'살인의 고의'가 있었음을 규명한 후 피고인을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속하였고,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에 요청하여 범행에 사용한 매트, 의료기록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-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의 유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☑

1

피고인

- 피고인 A(남, 38세), 태권도장 관장

2

공소사실의 요지

- '24. 7. 12. 19:00경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 내에서,
 - 손과 발로 피해아동(남, 3세)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아동을 안아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아동을 매달리게 하고,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(높이: 124cm, 구멍 지름: 약 18~23cm)에 피해아동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한 채 강제로 밀어 넣고 약 27분간* 좁은 매트 안에서 갇혀 있도록 두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여,
 - '24. 7. 23. 10:34경 결국 피해아동이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함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살해)]

* 복원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아동의 매트 구멍 내 방치 시간을 정확히 특정

3

수사 경과

- '24. 7. 14. 피고인 A 구속
- '24. 7. 19. 경찰, 피고인 A 구속 송치
- '24. 7. 23. 피해아동 사망
- '24. 7. 23. ~ 8. 2. CCTV 영상 및 의료기록 정밀 분석
- '24. 7. 25. ~ 8. 1. 태권도장 사범, 관원, 119 구급대원, 의료진 등 다수 참고인 조사
- '24. 7. 25. ~ 8. 2. 국과수 법의관 1차 소견, 검찰 전문수사자문위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·법의학자 자문 의뢰 및 회신
- '24. 7. 29.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
- '24. 8. 7. 피고인 A 구속 기소

4

수사 결과

1. 다각적 보완 수사 통해 피고인의 '살해 고의' 규명

-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해 아동이 사망하자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직접 검시한 뒤 부검을 지휘하고,
 - 119 구급대원 및 의료진 조사, 의료기록 분석을 진행하여 매트 재질(별첨 사진 참조), 피해 아동의 신체적 특징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한편,
 - 국과수 법의학관의 1차 부검 소견 외에도 검찰 전문수사자문위원인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, 법의학자 등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음
 - 또한 관련 참고인들을 전면 재조사하고,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유사 아동학대 사례를 정밀 분석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,
 - ① 피고인이 다른 사범으로부터 피해 아동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, ②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장시간 매트 안에 계속 방치한 사실, ③ 피해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*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,
- * 피고인은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아동체육학 이수자,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, 피해 아동의 신체적 취약성 및 피해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
-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실한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여, 피고인을 '아동학대살해죄'로 구속 기소하였음

2. 복구된 CCTV영상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사실 확인

- 나아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거나 추가 복구된 태권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매트에 넣기 직전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,

-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 행위 역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후 이를 학대 행위에 포함시켜 기소하였음

※ 한편, 경찰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추가 CCTV 복구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

3. 피해자 유족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·지원 실시

- 검찰은 피해아동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팀을 통해 경제적 지원,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,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임

5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, 다각도의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
- 앞으로 검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- 또한 피해 아동의 유족 등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☐

[별첨]

범행에 사용한 매트 사진



※ 피고인은 구멍 지름 약 18~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이 사용된 말려진 매트(높이 124cm, 전체 지름 63cm) 안에 피해 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고 갇혀 있게 하였음